

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 한센병환자 진료 위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		
의안번호	제129호	제 출 자	논산시장
제 출 일	2022. 9.14.	회부연월일	2022. 9.14.

1. 제안이유

- 논산시 한센병환자 진료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(2022.12.31.)됨에 따라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·치료로 전파방지 및 장애를 예방하고자 한센사업지침에 의거 전문성이 확보된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에 민간위탁을 하기에 앞서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위탁기간 : 2023. 01. 01. ~ 2025. 12. 31.(3년간)
- 사업내용 : 논산시 관내 등록한센인 이동진료 등
- 사업범위 : 논산시 관내 등록한센인
- 위탁사무
 - 한센병의 예방치료 등 한센병 관리에 관한 업무
 - 한센병의 조사 연구사업

3. 검토의견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제3항, 「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」 제4조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, 제23조제1항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